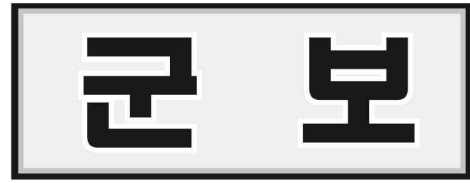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31호 2026. 8. 28.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162호 팔덕면 광암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승인 고시 1
- 순창군 고시 제2026-164호 팔덕면 창덕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3

공 고

- 순창군 공고 제2026-834호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4
- 순창군 공고 제2026-835호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순창군 공고 제2026-843호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해체 공청회 등의 공고 15
- 순창군 공고 제2026-845호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 순창군 공고 제2026-857호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8

회 람								
--------	--	--	--	--	--	--	--	--

발 행 : 순창군 (편집 기획예산실)

순창군 고시 제2026-162호

팔덕면 광암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승인·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승인·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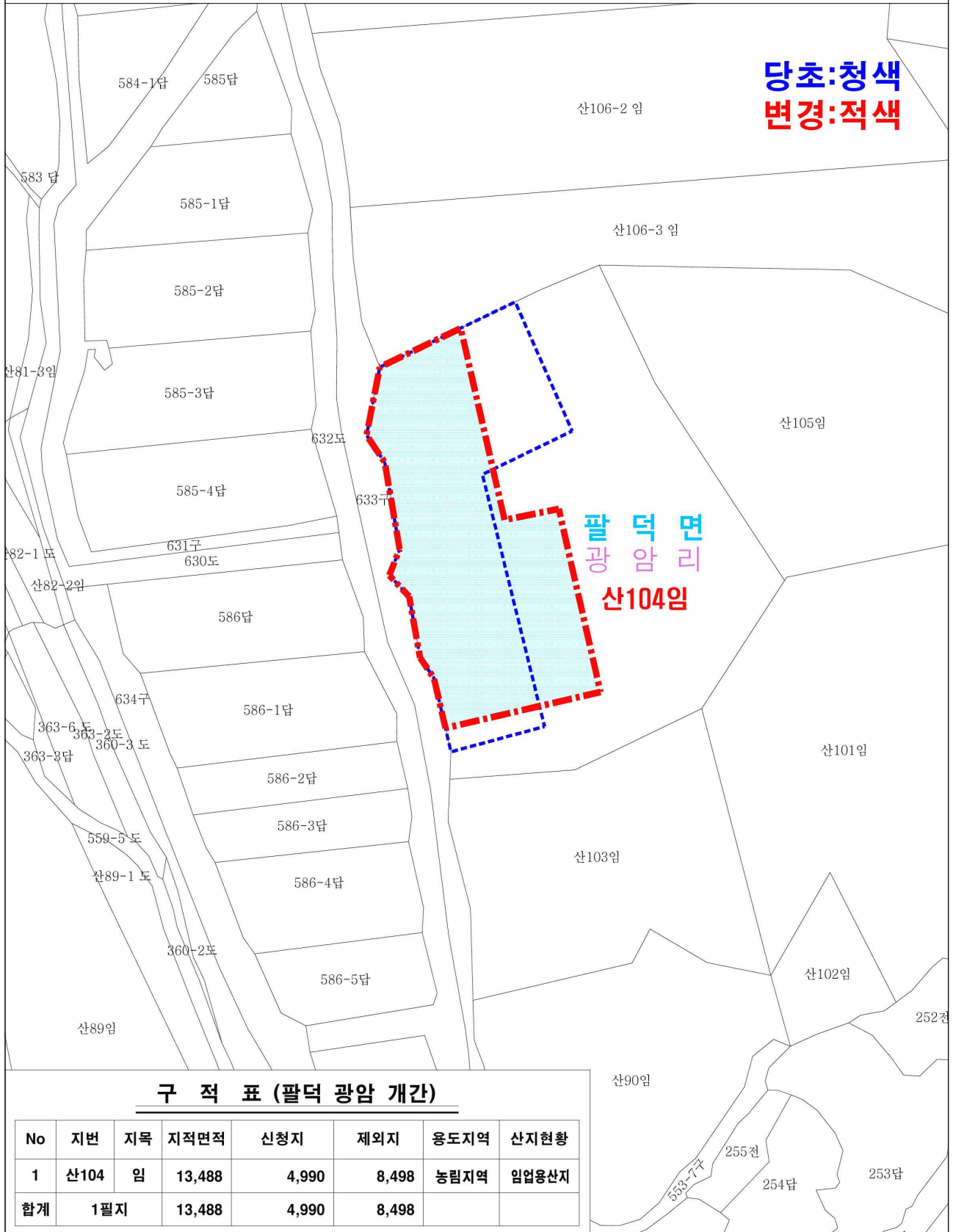
2026년 8월 31일

순 창 군 수

1. 사업의 목적	개간사업(두릅 재배)	
2. 사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산104번지	
3. 사업시행자	성 명	홍 * *
	주 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00리 000-0
4. 지적/시행면적	13,488㎡ / 4,990㎡	
5. 사업소요비용	당초	6,210,000원
	변경	7,000,000원
6. 사업기간	2026. 06. 17. ~ 2027. 06. 17.	
7. 사업효과	농가소득 향상	
8. 이의신청	순창군청(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063-650-1836)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지형고시도면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산104번지



순창군 고시 제2026-164호

팔덕면 창덕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순창군수

1. 사업의 목적	개간사업(두릅 재배)	
2. 사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팔덕면 창덕리 산32-1번지	
3. 사업시행자	성명	남 *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00로 00-0, 000호
4. 지적/시행면적	11,057㎡ / 4,990㎡	
5. 사업소요비용	2,310,000원	
6. 사업기간	2025. 9. 22. ~ 2026. 7. 31.	
7. 사업효과	농가소득 창출	
8. 이의신청	순창군청(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063-650-1836)	

순창군 공고 제2026 - 834호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 공고

순창군 고시 제2025-68호(2025. 4. 30.)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된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2-151호선, 경관녹지①, 완충녹지③)사업을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순 창 군 수

■ 순창 군관리계획(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변경 부분에 한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51	8	국지 도로	1,026	인계면 쌍암리 산184임	인계면 쌍암리 산165임	일반 도로	-	지식경제부 2008-235호 2008.12.31	“선형 및 면적 변경”
변경	소로	2	151	8	국지 도로	1,026	인계면 쌍암리 산184임	인계면 쌍암리 산165임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51	소로2-151	- 선형 및 면적 변경 - 기정 8,200㎡ - 변경 8,114㎡ 감)86㎡ - 폭 8m, 연장 1,026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일부선형 및 면적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경관녹지	인계면 쌍암리 산166-1 일원	4,390	-	4,390	지식경제부 2008-235호 2008.12.31	“형태 조정”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인계면 쌍암리 산166-1 일원	2,547	-	2,547	”	“형태 조정”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경관녹지	◦ 형태 조정 면적 : 4,39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형태 조정
③	완충녹지	◦ 형태 조정 면적 : 2,54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형태 조정

■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72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51호선, 경관녹지①, 완충녹지③)사업

2) 명 칭 : 순창 농촌테마공원(치유농업) 도로 및 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

시 설 명	사 업 규 모	비 고
군계획시설 (도로/소로2-151호선)	◦ 면적 : 기정 1,710㎡, 변경 1,720㎡, 증)10㎡ ◦ 연장 214m, 폭 8m(변경없음)	
군계획시설 (녹지/경관녹지①)	◦ 면적 : 기정 284㎡, 변경 286㎡, 증)2㎡	
군계획시설 (녹지/완충녹지③)	◦ 면적 : 405㎡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순창군수

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열람기간 및 장소

1) 기 간 : 2026. 8. 28. ~ 2026. 9. 11.(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2) 장 소 : 순창군청 건설과,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 인계면사무소

3) 의견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사. 관련도서 : “계재생략”

아.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7)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3-650-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면	리	지 번		지 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기 정	변 경											
합 계						44,620	13,966	2,399	2,411	-	-	-	-	-	
1	인계	쌍암	728-5	728-5가	대지	12,308	4	2	4	순창군	-	-	-	-	
2	인계	쌍암	728-18	728-18	임야	507	507	1	-	순창군	-	-	-	-	
3	인계	쌍암	728-27	728-27	도로	220	220	35	35	순창군	-	-	-	-	
4	인계	쌍암	산166-1	728-30다	임야	21,682	1,562	2,109	1,562	순창군	-	-	-	-	
5	인계	쌍암		728-30라	임야		1,300		258	순창군	-	-	-	-	
6	인계	쌍암		728-30바	임야		286		286	순창군	-	-	-	-	
7	인계	쌍암	산169-1	728-32	임야	9,903	9,968	252	147	순창군	-	-	-	-	
8	인계	쌍암		728-32가	임야		119		119	순창군	-	-	-	-	

※ 참고 : 상기 ‘가’ , ‘다’ , ‘라’ , ‘바’ 기호는 지적측량결과(2026.06.12.)에 따른 임시 기호(가번지)이며, 향후 지적공부 정리 시 확정지번으로 변경될 예정임.

주 민 의 건 서

종 류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51호선, 경관녹지①, 완충녹지③)사업			
명 칭	순창 농촌테마공원(치유농업) 도로 및 녹지 조성사업			
공람기간	2026. 8. 28. ~ 2026. 9. 11.(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의 건 제 출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35호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및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내용에 “지원금” 명시 및 지원 개념 구체화(안 제2조제2호)
- 나.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지원금, 임차료 등 구체적 사업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 다.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되는 지원사업의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근거 마련(안 제15조)
- 라. 「소상공인 기본법」을 준용대상에 추가 명시(안 제25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36, Fax 063-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주무관(☎063-650-1336)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조금과”를 “보조금, 지원금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중 “사업장에 직접”을 “경영안정 및 사업장 운영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경쟁력”을 “경영안정 및 경쟁력”으로 한다.

3.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지원금
4. 임차료 등 사업장 차임비용

제15조 단서 중 “이차보전사업과 특례보증사업”을 “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사업, 골목상권 활력수당 및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 ③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소상공인 중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원”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u>보조금과</u> 융자금 이차보전을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소상공인의 <u>사업장에 직접</u>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보조금, 지원금 및</u> -----. 3. “----- <u>경영안정 및 사업장 운영에</u> ----- -----.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3. (생 략)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u>경쟁력</u>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내용) ----- -----. 1. · 2. (현행과 같음) 3. <u>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지원금</u> 4. <u>임차료 등 사업장 차임비용</u> 5. (현행 제3호와 같음) 6. ----- <u>경영안정 및 경쟁력</u> -----
제15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사업비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 중 <u>이차보전사업과 특례보증사업</u> 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대상자 선정) ----- ----- ----- ----- <u>이차보전사업, 특례보증사업, 골목상권 활력</u> <u>수당 및 임차료 지원사업</u> -----.
제16조(선정기준) ① · ② (생 략) <u><신 설></u> ③ · ④ (생 략)	제16조(선정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소상공인 중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정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 준용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기본법」,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 준용한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순창군 공고 제2026-843호

-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해제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해제 공청회 등의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 지정해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순 창 군 수

1. 특구계획 지정해제(안) 개요

- 특구명칭 :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산 159번지 일대
- 특구면적 : 296,467㎡
- 특화사업의 시행 기간 : 2008 ~ 2026 (18년)
- 공고기간 : 2026. 8. 28. ~ 9. 17. (20일간)
- 특구 해제의 필요성

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장수 및 고령친화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2008년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로 지정받았음
나. 그동안 건강장수 연구 집적지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건강장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매년 방문객과 수입액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효과로 전국 유일 제1의 건강장수고을로 앞장서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

2. 특화사업 : 3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

특화사업		추진기간
	세부사업	
① 건강장수교육체험시설 설립 및 운영		
	건강장수힐링교육·체험운영	2007 ~ 2026
	건강장수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2014 ~ 2026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건립	2012 ~ 2014
	식문화체험실습관 구축	2015 ~ 2016
	의농업전시관 건립 및 운영	2015 ~ 2026
②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농공단지조성	2009 ~ 2020
	농·특산물 원료 및 생산품 보관시설 건립	2015 ~ 2016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	2021 ~ 2023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운영	2021 ~ 2026
③ 건강장수치유단지조성		
	치유의 숲 산림욕장 조성	2008 ~ 2023
	치유농업과학 연구센터 조성	2021 ~ 2026

3. 규제특례 사항

○법 제64조(「도시·군 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제1항 제2호「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제1항 제4호「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6. 8. 28. ~ 9. 17.

○ 장 소 : 순창군청 1층 건강장수과 (☎063-650-1545)

5.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목 적 : 특구 지정해제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반영
- 일 시 : 2026. 9. 22.(화) 10:00 ~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인계면행정복지센터

6. 의견제출 및 방법

- 제 출 처 : 순창군청 1층 건강장수과 (☎063-650-154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서면 제출

7. 기타사항

-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해제(안) 공고 및 열람과 공청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강장수과(☎063-650-154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45호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 명칭, 운영시간, 시설 이용료 조정 및 위탁 관련 조항 추가를 통해 강천 힐링스파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변경(안 제3조)

나. 강천힐링스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시간 변경(안 제11조)

다. 위탁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5조2)

라. 강천힐링스파 시설 이용료 조정 및 할인대상 추가(별표 1)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1)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2) ☎ 063-650-1536, Fax 650-15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건강장수과 건강산업 주무관(☎063-650-15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강천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족욕카페”를 “족욕실”, “스넥바,”를 “스넥바,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사용자” ”를 “ “수탁자” ”로,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를 위탁받은 자이며, “사용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고, 이 때 이용중지 및 퇴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의”를 “시설의 운영시간은”으로 하고, “같다”를 “같으며, 입장은 종료 60분 전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유누리실”을 “치유누리실, 족욕실, 도반욕실”로 하고, 제2호 중 “07:00부터 20:00”을 “4월부터 9월까지는 07:00부터 20:00, 10월부터 3월까지는 08:00부터 19:00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과 내용 중 “사용허가”를 “위탁 또는 사용허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내용 중 “사용자에게” 를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용자 등을” 을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 등은” 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 등은” 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으로 한다.

제20조 내용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시설별 요금				
			치유누리실		도반욕실		온천정원
			비수기	성수기	일반(40분)	특별(60분)	
일반	개인	대인	14,000	18,000	8,000	11,000	8,000
		소인	11,000	14,000	6,000	9,000	6,000
	단체	대인	11,000	14,000	6,000	9,000	6,000
		소인	9,000	11,000	5,000	7,500	5,000
할인	군민	대인	7,000	9,000	4,000	5,500	4,000
		소인	5,500	7,000	3,000	4,500	3,000
	그 외	대인	11,000	14,000	6,000	9,000	6,000
		소인	9,000	11,000	5,000	7,500	5,000

2,000
(군민
무료)

※ 치유누리실 썬베드 대여료 5,000원/대(1일 사용료)

< 비 고 >

1. 대인은 13세 이상,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3세 미만으로 함
2. 할인대상은 순창군민, 명예군민, 생활군민, 협약기관(자매·우호교류 자치단체),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전북사랑도민증, 전북도 투어패스,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자로 하며, 해당사항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함. 단, 단체요금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음

가. 군민 : 순창군민, 명예군민, 생활군민, 협약기관,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며 단, 자녀중 2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함

나. 그 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전북사랑도민증, 전북도 투어패스,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자

3.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가. 비수기 : 3월~6월, 9월~12월

나. 성수기 : 7월~8월, 1월~2월

4.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생략)	제3조(정의)(현행과 같음)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하 “시설”이라 한다)라 함은 치유누리실, <u>족욕카페</u> , 도반욕실, 편백수면실, <u>스넥바</u> , 어린이놀이방, 온천정원(동굴형체험장, 야외 온천족욕장, 강천음용수취수장) 등을 말한다.	1. ----- ----- <u>족욕실</u> , ----- <u>스넥바</u> , -----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 <u>사용자</u> ”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u>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u>	4. “ <u>수탁자</u> ” ----- ----- <u>전부를 위탁받은 자</u> 이며, “사용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u>전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u>
제7조(이용료 감면) ①(생략)	제7조(이용료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이용료의 <u>전부를</u>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u>전부 또는 일부를</u> ----- ----- -----.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생략)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중지 및 퇴장을 <u>명할 수 있다.</u>	②----- ----- ----- <u>명할 수 있고, 이 때 이용중지 및 퇴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u>
제11조(운영시간) ①시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운영시간) ①----- <u>같으며, 입장은 종료 60분 전까지로 한다.</u>
1. <u>치유누리실</u>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1. <u>치유누리실, 족욕실, 도반욕실</u> ----- -----.
2. 온천정원 이용시간은 <u>07:00부터 20:00까지</u>	2. ----- <u>4월부터 9월까지는 07:00부터</u>

운영한다. 3. <u>치유누리실, 온천정원 외의 시설 이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 운영한다.</u> ②(생략)	<u>20:00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08:00부터 19:00까지</u> -----. <삭 제> ②(현행과 같음)
제13조(<u>사용허가</u>) ①시설의 모든 시설물은 군수가 운영·관리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사용허가</u>할 수 있다. ②<u>사용허가</u>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u>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u>	제13조(<u>위탁 또는 사용허가</u>) ①----- ----- ----- -----<u>위탁 또는 사용허가</u>----- -----. ②<u>위탁 또는 사용허가</u> ----- <u>3년 이내로 한다.</u>
<신 설>	제15조2(<u>수탁자의 의무</u>)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u>사용자에게</u>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 ----- ----- ----- ----- ----- <u>수탁자 또는 사용자</u>에게 -----.
제1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사용자 등을</u>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u>사용자 등은</u>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 --- <u>수탁자 또는 사용자</u>를 -----. ②<u>수탁자 또는 사용자</u>는 ----- ----- -----.

③ <u>사용자</u>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u>수탁자 또는 사용자</u> 는 -----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 「 <u>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u> 」, 「 <u>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u> 」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 「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 「 <u>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u> 」, 「 <u>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u> 」, 「 <u>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u> 」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요금					온천정원
			치유누리실		도반욕실		족욕카페 (30분)	
			비수기	성수기	일반 (40분)	특별 (60분)		
일반	개인	대인	12,000	15,000	7,000	10,000	7,000	2,000 (순창군민 무료)
		소인	10,000	12,000	5,500	8,000	5,500	
		대인	10,000	12,000	5,500	8,000	5,500	
		소인	8,000	10,000	4,500	6,500	4,500	
할인	군민	대인	6,000	7,500	3,500	5,000	3,500	
		소인	5,000	6,000	3,000	4,000	3,000	
		대인	10,000	12,000	5,500	8,000	5,500	
		소인	8,000	8,000	4,500	6,500	4,500	

※ 치유누리실 썬베드 대여료 5,000원/대(1일 사용료)

<비고>

1. 대인은 13세 이상,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3세 미만으로 함

2. 할인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및 순창군민으로 하며, 해당사항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함. 단, 단체요금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음

가. 군민 : 순창군민, 명예군민

나. 그 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3.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가. 비수기 : 3월~6월, 9월~12월

나. 성수기 : 7월~8월, 1월~2월

4.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함

5. 순창군민에 한하여 온천정원 이용요금을 무료로 함

개정

[별표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이용료 기준(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요금					온천정원
			치유누리실		도반욕실		족욕실 (30분)	
			비수기	성수기	일반 (40분)	특별 (60분)		
일반	개인	대인	14,000	18,000	8,000	11,000	8,000	2,000 (군민 무료)
		소인	11,000	14,000	6,000	9,000	6,000	
		대인	11,000	14,000	6,000	9,000	6,000	
		소인	9,000	11,000	5,000	7,500	5,000	
할인	군민	대인	7,000	9,000	4,000	5,500	4,000	
		소인	5,500	7,000	3,000	4,500	3,000	
		대인	11,000	14,000	6,000	9,000	6,000	
		소인	9,000	11,000	5,000	7,500	5,000	

※ 치유누리실 썬베드 대여료 5,000원/대(1일 사용료)

<비고>

1. 대인은 13세 이상, 소인은 3세(36개월)이상 13세 미만으로 함

2. 할인대상은 순창군민, 명예군민, 생활군민, 협약기관(자매우호교류 자치단체),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전북사랑도민증, 전북도 투어패스,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자로 하며, 해당사항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등)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함. 단, 단체요금과 중복하여 할인하지 않음

가. 군민 : 순창군민, 명예군민, 생활군민, 협약기관,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며 단, 자녀중 2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함

나. 그 외 :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병역명문가, 전북사랑도민증, 전북도 투어패스,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자

3.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가. 비수기 : 3월~6월, 9월~12월

나. 성수기 : 7월~8월, 1월~2월

4.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일행을 말함

5. <삭제>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857호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중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정(안 제4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경제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22, Fax 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담당자 최연제 (☎063-650-13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태양광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4. “풍력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관할구역 내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적용한다.

제4조(이격거리 기준) ① 법 제27조의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문화재(국가·도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 경계 및 지적경계로부터 30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부터 20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5.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의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 또는 지원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의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2.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의 범위 내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